

영어교육과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(2023-1)

- * 관련 서식은 교직부 홈페이지(<http://my.ewha.ac.kr/teaching/>)에서 확인
- * 교직부 홈페이지, 사범대학 홈페이지, 서울동행, 다해드림, 개별 섭외 등을 통해 기관 섭외

1. 영어교육과 교육봉사 인정 기관 (2023-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)

- (1)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·초·중등학교
- (2) 비영리기관 중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사회복지시설 중 6개 기관
 - 해당 기관: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, 성산종합사회복지관, 북아현방과후교실, 충현방과후교실,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, 서대문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 - 영교과 기준 초등학생 이상 대상 기관만 가능함에 따라 이대복지어린이집은 교육봉사 인정 기관에서 제외됨

2. 절차

(1)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

- 봉사활동 시작 전에 아래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**미리 제출해야 인정 가능**
(봉사 중 혹은 봉사 종료 후에 제출할 경우 **2023-1학기부터는 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**)

	유·초·중등학교	비영리기관
제출 서류	교육봉사활동 계획서(서식1)	1. 교육봉사활동 계획서(서식1) 2. 자율선택신청서(서식6,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) 3. 기관 고유번호증 및 소개 자료(교직부 홈페이지에 게시) 4. 학과장님 승인 메일 증빙(캡처 혹은 메일 전달)
제출 방법	-	자율선택신청서(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), 기관 고유번호증 및 소개 자료(교직부에서 수령 가능)를 첨부하여 학과장님 메일로 적격판정 요청 → 승인받은 후 제출 서류 1~4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
	모든 서명 란에 도장 혹은 자필 서명된 원본을 학과 사무실에 방문 및 우편 제출 (전자파일은 사본으로 간주되므로 메일 제출 불가)	

* 유·초·중등학교가 아닌 비영리기관에서 봉사할 경우

- 교직부를 통해 신청한 경우/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도 반드시 **학과 적격판정 절차**를 거쳐야 함

(2) 교육봉사활동 종료 시

- 확인서, 평가서 등의 제출 서류들의 원본을 구비 및 보관 (**제출은 교봉이 수강 시에만 가능**)
- 교직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본인 학번에 해당되는 서식에 맞게 구비
- 봉사 기관의 직인, 담당자의 도장 및 서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(누락될 경우 추후 기관을 재방문하여 받아와야 함)
- 수정테이프/수정펜 사용이 불가하며, 반드시 두 줄 긋고 수정 후 해당 부분에 봉사기관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와야 함 (봉사 날짜 및 시간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)
-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므로 메일/팩스 등을 통해 파일로 받지 말고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영어교육과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(2023-1)

(3) 교육봉사 60시간 완료 후

- 2학기에 영어교육과에서 개설되는 [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] 수강신청
- 학기 중 별도 안내되는 공지에 따라 서류 제출 (**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**)
-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학기말 S/U로 성적 산출됨
- 제출 서류

17학번까지	18학번부터	점검 내용
1. 교육봉사활동 계획서(서식1)*	1. 교육봉사활동 계획서(서식1)*	
2. 교육봉사활동 확인서(서식2)	2. 교육봉사활동 확인서(서식2)	-총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-기관장 직인 날인 -기관이 다수일 경우 봉사기관별로 각각 작성
3. 교육봉사활동 일지(서식3)	-	-매회 작성 여부 -매회 본인/지도교수 날인 -봉사시간 일치 여부
4.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(서식4)	-	
5. 교육봉사활동 보고서(서식5)	3. 교육봉사활동 평가서(서식3)	-확인서의 봉사기관 수와 총 봉사시간 일치 여부
6. 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제출용)**	4. 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제출용)**	

* 계획서: 시작 전 계획서 원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 생략

** 인증서: THE포트폴리오 > THE학습 > 비교과관리 > 사회봉사인증 > 교직제출용 → 출력
 - 교육봉사활동 실적과 사회봉사 학점이수 이증 활용 불가
 -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

3. 유의사항

- 교육봉사활동 기간에 재학 상태여야 인정 (휴학, 수료 상태 시 활동은 인정 불가)
- 방학 중에도 가능하나 직전 학기가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인정 (휴학, 수료 중 방학은 불가)
-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여야 함 (단순 업무보조, 급식지도, 야간자율학습 감독, 도서관 장서 정리, 교재 제작 등 불가)
- 비대면 교육봉사 인정 불가
- 전공과목으로 교육봉사하는 것을 권장하지만, 타 과목 교육봉사도 가능
- 영어교육과는 2학기에만 [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] 교과목이 개설됨
- **졸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학기에 타과 개설 교봉이를 수강해야 할 경우 1학기 수강신청 전 1월까지** 졸업 예정 증빙(졸업시물레이션 결과)을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 메일로 먼저 문의할 것 (**타과 교수님 혹은 타과 사무실에 개별 문의 불가**)
- (2023. 6. 30. 추가) 조기졸업, 교환학생 등의 이유로 4학년 2학기에 수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교육봉사 60시간을 미리 완료한 후 3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. 타과 교봉이 수강은 각 학과의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. 타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봉이가 없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필수 과목인 교봉이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해 **졸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교과 개설 교봉이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.**